

##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미생물센터 고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7. 8. ~ 7. 15.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020호
----------	--------

발의연월일 : 2019. 7. 8 .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 1. 개정이유

- 최근 가구 구성비율 중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정책 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고,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상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현행)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호의2)
  -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1인가구 복지증진 사업 추가(안 제12조 제2항)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u>에 의거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건강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 략)</p> <p>1. ~ 2.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3. ~ 4. (생 략)</p> <p>제12조(설치 및 사업)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p>	<p>제1조(목적) ----- 「<u>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u>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설치 및 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p> <p><u>6. (현행과 같음)</u></p>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022호
----------	--------

발의연월일 : 2019. 7. 8.

발 의 자 : 박재원 의원,  
박혜정 의원

## 1. 개정이유

-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 세출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재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 비용추계 기간을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명확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4조)
  - 비용추계 기간 : (현행) 의안의 시행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5년  
→ (단서 신설)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 작성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안 비용추계서(제3조 관련)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 2. 비용추계의 전제

○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총 비용(a-b)						
세입(a)						
○○○○						
세출(b)						
○○○○						

※ 세입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 3-1. 세입 비용추계(제4조 제4항 단서 관련)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총계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6. 협의사항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8. 작성자(참여자)

○○○○국 ○○○과 ○○과장 (☎ ○○○○)

## 작성요령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순천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과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구분 제시한다.(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현 할 수 있음)

### 4. 재원조달 계획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산출기초와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6. 협의사항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 승인, 검토사항 등을 명시한다.

### 7. 부대의견

재원조달 방안과 시행에 있어 관련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8. 작성자

비용추계서의 작성자 또는 참여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③ (생략)</p> <p>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 신설)</p>	<p>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u>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 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u></p>

#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23호
----------	--------

○ 발의연월일 : 2019. 7. 8.

○ 발 의 자 : 김미애 의원, 박종호 의원

## 1. 제정이유

- 순천시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아동 치과 의료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및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사업추진,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9조)
- 재정지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구강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제7조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전라남도 : 목포시, 무안군 등 2개 시·군

○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북구, 성남시 등 43개 시·군

# 순천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초등학교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관내 구강 검진기관으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치료하기로 결정한 치과의를 말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치과치료 지원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3. 아동의 치과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 1학년과 4학년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지원범위)**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매년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및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
2. 교육 및 예방 사업: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절주
3.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제8조(의료비 신청)**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원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3. 구강검진결과 통보서
4. 구강진료 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의료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 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교육지원청, 치의학 및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제정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 제8조)
  - 지원 대상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신고한 세대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신고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세부 지원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시기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1인당 20리터 20매 최대 200매	· 전입신고 시
	이사용품구입비	세대당 10만원 (순천시랑생품권 또는 현금)	· 전입신고 시 ·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
전입대학생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1인 최대 50만원 (순천시랑생품권 또는 현금)	· 전입신고 시 20만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만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0만원

※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와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지원

-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 2019. 5. 31. ~ 6. 20.)

○ 의견 1

• 제출자 : ○○○(순천시 조곡동)

• 내 용

- ‘대학’ 에 대한 정의 포함 및 [별표 1] 쓰레기종량제봉투 1인 전입세대  
지원 요청

○ 의견 2

• 제출자 : ○○○(순천시 조례동)

• 내 용

- 제2조 및 별표 1의 ‘타 시군구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중  
‘1년 이전부터’ 라는 기간 삭제 요청

○ 주무부서 검토결과 :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5. 21.(기획예산실-632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27.(여성가족과-653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21.(기획예산실-63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31.(순천시 공고 제2019-1064호)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3.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학생으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장려 시책 : 전입세대 지원,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신청 절차)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 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하고 지급한다.

제6조(지원시기) 제4조에 따른 인구정책시책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장이 지급한다.
2.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지원은 읍·면·동장이 매월 말일까지 신청·접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이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등 비치) 인구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에서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제3조, 제4조 관련)

### 1. 지원 대상

추진분야	시책명	지 원 대 상
전입 장려	전입세대 지 원	<b>쓰레기종량제봉투</b>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순천시에 전입신고한 사람
		<b>이사용품구입비</b>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순천시에 전입신고한 세대의 세대주
	전입대학생 (대학원생) 지 원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신고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단,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와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은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 2. 세부 지원 기준

추진분야	시 책 명	지원내용 및 기준
전입 장려	전입세대 지 원	• 쓰레기종량제봉투(20리터) • 1인당 20매, 최대 200매 • 이사용품구입비 • 1세대당 1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전입대학생 (대학원생) 지 원	• 전입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전입신고 시 20만원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만원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0만원

※ 단,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와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은 1회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대원수						
전입일						
전주소지						
현주소지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대주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						
수령증 쓰레기봉투 리터 매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세대주와의 관계 : )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담당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입 전 주소, 순천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학교명, 학교 재학여부,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대원수						
전입일						
전주소지						
현주소지						
<p>「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세대주와의 관계 : )</p> <p>순천시장 귀하</p>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담당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입 전 주소, 순천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학교명, 학교 재학여부,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즉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학교명		학과명		학년	
전입일			순천시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전주소지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대주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					
붙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담당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입 전 주소, 순천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학교명, 학교 재학여부,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 거주기간, 재학여부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별지 제6호 서식]

# 인구증가시책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연번	구분	신청일 (전입일)	신청인							수령		수불현황 (순천사랑상품권 0만원권, 매)			결재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명	학년	전주소	현주소 (연락처)	수령인	지급 (0만원권, 매)	수	불	잔량	담당자	팀 장	읍면동장

※ 구분 : ① 전입신고 시 ②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③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내용)

- 순천시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전입세대 지원

가. 쓰레기종량제봉투 : 전입신고 시 세대원 1인당 20리터 20매, 최대 200매

나. 이사용품구입비 : 전입신고 시 세대당 10만원

→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

#### 2)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전입 장려금 : 최대 50만원

가. 전입신고 시 20만원

나.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10만원

다.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시 20만원

※ 전입세대 이사용품구입비,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전입 장려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2024년 이후
총 비용(a-b)	3,118,550	305,480	553,814	597,814	555,814	551,814	553,814
세입(a)	-	-	-	-	-	-	-
세출(b)	3,118,550	305,480	553,814	597,814	555,814	551,814	553,814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3,118,550	305,480	553,814	597,814	555,814	551,814	553,814
시 비	3,118,550	305,480	553,814	597,814	555,814	551,814	553,814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 대상

- 전입세대 및 세대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로 전입한 자
-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로 전입 신고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지급액

- 전입세대
  - 쓰레기종량제봉투 : 1인 20리터 20매, 최대 200매
  - 이사용품구입비 : 10만원(2인 이상 전입세대)
-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 최대 50만원
  - 전입신고 후 : 20만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10만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0만원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시비	305,480	553,814	597,814	555,814	551,814	553,814

① 2019년 소요예산 : 305,480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40,480천원(4,600명) \* 1인 지원 8,800원 상당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12개월 × 3개월
  - 산출기초 : 4,600명 × 440원 × 20매 = 40,480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65,000천원(65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 ÷ 12개월 × 3개월
  - 산출기초 : 650세대 × 100,000원 = 65,000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200,000천원(1,000명)
  - 대상자수 산정 : 순천시 소재 타지역 대학생 6,400명 중 15%
    - \* 목포시 500명, 익산시 2,400명 산정
  - 산출기초 : 1,000명 × 200,000원 = 200,000천원

② 2020년 소요예산 : 553,814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161,814천원(18,388명)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산출기초 : 18,388명 × 440원 × 20매 = 161,814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257,000천원(2,57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
  - 산출기초 : 2,570세대 × 100,000원 = 257,000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135,000천원(1,050명)
  - 대상자수 산정
    - 1차분(200천원) : 300명(신규신청 / 2019년 총 지원인원 1,000명의 30%)
    - 2차분(100천원) : 750명(2019년 지원 1,000명 - 졸업생 250명(1,000명 ÷ 4))
  - 산출기초
    - 1차분 300명 × 200,000원 = 60,000천원
    - 2차분 750명 × 100,000원 = 75,000천원

③ 2021년 소요예산 : 597,814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161,814천원(18,388명)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산출기초 :  $18,388\text{명} \times 440\text{원} \times 20\text{매} = 161,814\text{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230,000천원(2,30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의 90%(재전입자 제외)
- 산출기초 :  $2,300\text{세대} \times 100,000\text{원} = 230,000\text{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206,000천원(1,180명)

- 대상자수 산정
  - ┌ 1차분(200천원) : 320명(신규신청 / 2020년 총 지급인원 1,050명의 30%)
  - └ 2차분(100천원) : 300명(2020년 1차분 지원)
  - └ 3차분(200천원) : 560명(2020년 2차분 지원 750명 - 졸업생 190명(750÷4))
- 산출기초
  - ┌ 1차분  $32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64,000\text{천원}$
  - └ 2차분  $300\text{명} \times 100,000\text{원} = 30,000\text{천원}$
  - └ 3차분  $56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112,000\text{천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이사용품 구입비(391,814천원) → 2021부터 2024년 이후까지 대상자수 산정 및 산출기초 같음

④ 2022년 소요예산 : 555,814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161,814천원(18,388명)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산출기초 :  $18,388\text{명} \times 440\text{원} \times 20\text{매} = 161,814\text{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230,000천원(2,30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의 90%(재전입자 제외)
- 산출기초 :  $2,300\text{세대} \times 100,000\text{원} = 230,000\text{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164,000천원(980명)

- 대상자수 산정
  - ┌ 1차분(200천원) : 360명(신규신청 / 2021년 총 지원인원 1,180명의 30%)
  - └ 2차분(100천원) : 320명(2021년 1차분 지원)
  - └ 3차분(200천원) : 300명(2021년 2차분 지원)
- 산출기초
  - ┌ 1차분  $36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72,000\text{천원}$
  - └ 2차분  $320\text{명} \times 100,000\text{원} = 32,000\text{천원}$
  - └ 3차분  $30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60,000\text{천원}$

㉑ 2023년 소요예산 : 551,814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161,814천원(18,388명)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산출기초 :  $18,388\text{명} \times 440\text{원} \times 20\text{매} = 161,814\text{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230,000천원(2,30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의 90%(재전입자 제외)
- 산출기초 :  $2,300\text{세대} \times 100,000\text{원} = 230,000\text{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160,000천원(980명)

- 대상자수 산정
  - ┌ 1차분(200천원) : 300명(신규신청 / 2022년 총 지원인원 980명의 30%)
  - └ 2차분(100천원) : 360명(2022년 1차분 지원)
  - └ 3차분(200천원) : 320명(2022년 2차분 지원)
- 산출기초
  - ┌ 1차분  $30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60,000\text{천원}$
  - └ 2차분  $360\text{명} \times 100,000\text{원} = 36,000\text{천원}$
  - └ 3차분  $32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64,000\text{천원}$

㉒ 2024년 소요예산 : 553,814천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 161,814천원(18,388명)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자 18,388명
- 산출기초 :  $18,388\text{명} \times 440\text{원} \times 20\text{매} = 161,814\text{천원}$

○ 이사용품구입비 : 230,000천원(2,300세대)

- 대상자수 산정 : 2018년 관외전입(2인이상 세대) 2,570세대의 90%(재전입자 제외)
- 산출기초 :  $2,300\text{세대} \times 100,000\text{원} = 230,000\text{천원}$

○ 전입대학생(대학원생) 지원 : 162,000천원(960명)

- 대상자수 산정
  - ┌ 1차분(200천원) : 300명(신규신청 / 2023년 총 지원인원 980명의 30%)
  - └ 2차분(100천원) : 300명(2023년 1차분 지원)
  - └ 3차분(200천원) : 360명(2023년 2차분 지원)
- 산출기초
  - ┌ 1차분  $30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60,000\text{천원}$
  - └ 2차분  $300\text{명} \times 100,000\text{원} = 30,000\text{천원}$
  - └ 3차분  $360\text{명} \times 200,000\text{원} = 72,000\text{천원}$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기획예산실	실장	백운석 (☎ 749-5440)
	인구정책팀장	박형숙 (☎ 749-4072)
	담당자	강형 (☎ 749-4073)

#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등 업무이관으로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

##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로 개정
- 시민의 날 과 팔마문화제 행사를 분리하여 추진
-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 분리하여 운영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경우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삽입 요구
  - 자치혁신과 검토결과 : 수용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0. ~ 5. 3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27.(여성가족과-113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7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30호)

#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를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시민의 날” 을 “순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를 “시민의 날” 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 를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각 호외 부분 중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를 “시민의 날”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를 “시민의 날” 로 한다.

제10조 중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를 “시민의 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민의 날) <u>시민의 날</u>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p>	<p>제2조(시민의 날) <u>순천시민의 날</u>(이하 “<u>시민의 날</u>” 이라 한다)-----</p>
<p>제3조(추진 위원회) <u>시민의 날</u> 및 <u>팔마문 화제</u>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u>시민의 날</u> 및 <u>팔마문화제</u>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u>순천시민의 상 조례</u>」에 따른다.</p>	<p>제3조(추진 위원회) <u>시민의 날</u> ----- ----- ----- 「<u>시민의 날</u> 행사추진위원회」 ----- ----- ----- -----</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u>시민의 날</u> 및 <u>팔마문화제</u> 행사 추진과 시민의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p> <p>1. <u>시민의 날</u> 및 <u>팔마문화제</u>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p> <p>2. ~ 3. (생략)</p>	<p>제5조(위원회 기능) ----- <u>시민의 날</u> ----- ----- -----.</p> <p>1. <u>시민의 날</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u>시민의 날</u> 및 <u>팔마문화제</u> 운영과 관련된 행사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예산지원) ----- <u>시민의 날</u> --- ----- ----- -----</p>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등 업무이관으로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

## 2. 주요내용

- 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 추천기한(6월 30일까지) 규정 폐지
- 시민의 상 추천 심사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0. ~ 5. 3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27.(여성가족과-1132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7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46호)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매월 6월 30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를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추천부문	세부 항목	사전 심사 부서	
		주관부서	관련부서
지역개발	도시, 건설	도시과	건설과
산업경제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 기술보급과
	임업	산림과	
	수산	순천만보전과	
	상공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교통	교통과	
사회복지	시민복지,근로후생, 호국보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효행선행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사업	평생교육과	
	공공질서	자치혁신과	
문화 관광 홍보	전통, 예술, 문학	문화예술과	
	관 광	관광과	
	언 론	홍보실	
교육과학 체육	교육,인문과학	평생교육과	
	체육	체육진흥과	
환경	생태보전, 대기,수질	환경보호과	순천만보전과
	재활용	청소자원과	

※ 사전 심사부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조직표에 의하여 운영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b> ①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u>매년 6월 30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u>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 5. (생략)</p> <p>② (생략)</p>	<p><b>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b> ① ----- ----- ----- -----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u> ----- ----. 다만, <u>「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u>----- -----.</p> <p style="margin-left: 20px;">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b> 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u>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한다.</u></p> <p>② ~ ③ (생략)</p>	<p><b>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b> 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u>「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2019년부터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그에 맞는 조문 삽입

## 2. 주요내용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제7항 신설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여성가족과에서 읍·면·동 참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삽입 요구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24. ~ 6. 1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3.(여성가족과-102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8.(기획예산실-56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24.(순천시 공고 제2019-1034호)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성하며” 를 “구성하고” 로, “구성하여야 한다” 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u>구성하며</u>,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50%이상이 되도록 <u>구성하여야 한다</u>.</p> <p>③ ~ ⑥ (생 략)</p> <p>&lt;신 설&gt;</p>	<p>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고</u> ----- ----- ----- <u>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p>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기타법령 개정사항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규정 단서 신설 (안 제4조제9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변경·폐지 시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회 생략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50퍼센트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6항)
-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7항)
-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기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개정(안 제35조 제1항)
-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 공개 규정 신설(안 제64조의2)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 제32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31. ~ 6.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27.(여성가족과-1131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28.(기획예산실-65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31.(순천시 공고 제2019-1067호)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5조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을 “최초년도에는” 으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을 “2차년도부터는” 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li> <li>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li> <li>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li> </ol>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최초년도에는 ----- ----- ----- 2차 년도부터는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64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u>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  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u></p>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018호
----------	--------

○제안연월일 : 2019. 7. 5.  
○제안자 : 이현재 의원

## 1. 개정이유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에 입주하는 작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추가(안 제11조)
- 웹툰센터에 입주하는 작가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추가(안 제4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제교류”를 “국제 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입주작가 및 입주기업의 창·제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시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스토리, 만화, 웹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입주작가 대표 1명
4. 입주기업 대표 1명
5. 웹툰 관련 업무 담당 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

2. 센터의 주요사업 및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만화·웹툰의 네트워크 구축 및 <u>국제교류</u></p> <p>6. <u>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u></p> <p>7. (생략)</p> <p>&lt;신설&gt;</p>	<p>제4조(기능)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국제 협력 사업</u></p> <p>6. <u>입주작가 및 입주기업의 창·제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u></p> <p>7.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u> <u>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시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u>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u></p>

2. 스토리, 만화, 웹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입주작가 대표 1명

4. 입주기업 대표 1명

5. 웹툰 관련 업무 담당 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  
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

2. 센터의 주요사업 및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⑦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준용)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현행 제12조와  
같음)

#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19호
----------	--------

- 제안연월일 : 2019. 7. 5.
- 제안자 : 이복남 의원,  
장숙희 의원

## 1.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자를 야생동물 소관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

## 2. 주요내용

-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 20만원 미만 → 10만원 미만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 안 제14조제4항)
  - (위원) 환경업무 담당국장 → 환경업무 담당국·소장  
순천시의회 의원 →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 (간사) 환경업무 담당과장 → 야생동물업무 담당과장
-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자를 야생동물업무 소관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 (안 제14조제2항)
  - 환경업무 담당국장 → 농업업무 담당소장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 2014.5.1.)

##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0만원 미만” 을 “10만원 미만”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업업무 담당소장” 을 “농업업무 담당소장, 환경업무 담당국·소장”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순천시의회 의원” 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업무 담당국장” 을 “농업업무 담당소장” 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환경업무 담당과장” 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과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p> <p>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u>20만원 미만</u>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1. ~ 2. (생략)</p>	<p>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10만원 미만</u>----- -----.</p> <p>③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u>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업업무 담당소장, 보건업무 담당소장</u>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순천시의회 의원 1명</u></p> <p>④ (생략)</p>	<p>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농업업무 담당소장, 환경업무 담당국·소장,</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환경업무 담당국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환경업무 담당과장</u>으로 한다.</p>	<p>제1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농업업무 담당소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야생동물업무 담당과장</u>-----.</p>

#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21호
----------	--------

○ 발의연월일 : 2019. 7. 8.

○ 발 의 자 : 박혜정 의원, 박계수 의원,  
이복남 의원

## 1. 제정이유

-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 적절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3조 ~ 안 제5조)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8조)
-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0조)
- 반려동물문화 조성,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안 제21조 ~ 안 제22조)
-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안 제23조 ~ 안 제26조)

## 3. 개정조례안 : 별 첨

## 4.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반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등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 · 목표 ·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반려·유기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에게 제18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 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 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동물 보호 비용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복지증진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10kg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10kg 이상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	-	해당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제정이유

- 순천팔마문화제 내실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 제정

##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 로 제정
-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 (안 제1조~제8조)
- 순천팔마문화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등(안 제9조 ~ 제11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8.(여성가족과-982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23.(기획예산실-512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30.(순천시 공고 제2019-884호)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순천팔마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순천팔마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제 업무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제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라남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라남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금년 예산확보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는 상당액으로 증액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679,620	△279,620	△300,000	△350,000	△350,000	△400,000
세입(a)		0	0	0	0	0
세출(b)	1,679,620	279,620	300,000	350,000	350,000	4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679,620	279,620	300,000	350,000	350,000	4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679,620	279,620	300,000	350,000	350,000	40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팔마문화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29,620,천원
  - 프로그램 기획 : 1식 × 40,000,000원 = 40,000,000원
  - 행사운영 인건비 등 : 33,000,000원
    - 종사자 인건비 : 100,000 × 50 × 5일 = 25,000,000원
    - 자원봉사 인건비 : 20,000 × 80명 × 5일 = 8,000,000원
  -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 56,620,000원
    - 홍보비 : 25,000,000 × 1식 = 25,000,000원
    - 자료집 제작등 25,000,000 × 1식 = 25,000,000원
    - 사무관리비 : 6,000,000 × 1식 = 6,000,000원
    - 공공운영비 : 620,000 × 1식 = 620,000원
- 팔마문화제 프로그램 참여단체 보상 등 : 150,000천원
  - 프로그램 참여단체 : 50개단체 × 3,000,000원 = 150,000,000원

## 6. 협의사항

- 순천예총 :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참여 협의
- 도시재생과 :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사용 등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749-6788)
	문화재활용팀장	신혜정(☎ 749-6814)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자 예술품 무료 대출 근거마련을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

## 2. 주요내용

- 제2조 제1호 중 “전자자료” 다음에 “예술품” 을 삽입한다.
- 제16조 제1항 중 “망실 또는” 을 “잃어버리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의 경우와” 를 “도서관 자료와” 로 한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4. ~ 6. 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8.(여성가족과-994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65호)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자자료” 다음에 “예술품” 을 삽입한다.

제16조 제1항 중 “망실 또는” 을 “잃어버리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의 경우와” 를 “도서관 자료와”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u>전자자료</u>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전자자료, 예술품</u> ----- -----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u>망실 또는</u>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u>도서의 경우와</u>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p>	<p>제16조(변상) ① ----- ----- <u>잃어버리거나</u> ----- ----- ----- ----- -----</p> <p>② ----- ----- <u>도서관 자료와</u> ----- ----- -----</p>

#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에 따른 순천시 미생물센터 시설 추가와 미생물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와 미생물 배달제와 같은 농업인 편의시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미생물센터에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 등 부대시설 신축에 따라 주요건물과 부대시설로 나누어 내용을 변경 (안 제2조제1호)
- 순천시 미생물센터 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생산 미생물제제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조6호)
-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에 따른 시설 및 기능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호)
- 순천시 미생물센터 주소를 변경(안 제3조)
- 미생물 포장 용량에 따라 공급가격이 변동하므로 공급단가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미생물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 방법 도입에 따른 개정 (안 제8조제2항)
- 미생물 배달에 시행에 따른 조항 신설(안 제10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31. ~ 2019. 6.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여성가족과-11320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19. 5. 28.(기획예산실-657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19. 5. 31.(순천시 공고 제2019-1079호)

#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순천시 미생물센터”란 미생물제제를 연구·개발·배양·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고품미생물 생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로, “액상 유용미생물”을 “액상미생물”로 변경한다.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이란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 농업인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6호(중전의 제2조제5호) 중 “액상 유용미생물”을 “액상미생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538-4에 둔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농업인 교육

제8조제1항 중 “공급가격” 을 “공급단가”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를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생물 배달) 농업인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

1. 미생물 배달 신청은 배달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한다.
2. 배달은 다음 각목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가. 월요일은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주암면을 배달한다.
  - 나. 화요일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동지역을 배달한다.
  - 다. 수요일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배달한다.
3. 배달일정은 미생물 생산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배달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미생물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제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6. 배달지역 도착 후 미생물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순천시미생물제제 공급단가

(제8조 관련)

구 분	액상미생물		고형미생물	
	단위	금액	단위	금액
순천시민 및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제6조제1항)	1ℓ	350원	1kg	500원
순천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1ℓ	550원	1kg	1,000원
순천시민 이외의 자 (제6조제2항)	1ℓ	1,100원	1kg	1,500원



[별지 제2호 서식]

##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b>■ 신청자 인적사항</b>				
1. 성명 :		2. 성별 : 남, 여		
3. 주소(거주지) :				
4. 연락처 :		5. 사용분야 :		
<b>■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내역</b>				
광합성균 (5ℓ)	고초균 (5ℓ)	유산균 (5ℓ)	효모균 (5ℓ)	특허균 (5ℓ)
포	포	포	포	포
BT제 (5ℓ)	토양개량제 (10kg)	생균제 (10kg)	기타( )	기타( )
포	포	포	포	포
<p>「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 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순천시장 귀하</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미생물센터”</u>란 <u>유용미생물배양실, 고품미생물생산시설, BM활성수 생산시설</u>을 말한다.</p> <p>2. <u>유용미생물배양실</u>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u>액상 유용미생물</u>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 <u>“고형미생물 생산시설”</u>이란 농가부산물과 기타 농축산에 유용한 물질을 첨가하여 <u>유용미생물배양실</u>에서 생산된 <u>액상 유용미생물</u>로 발효한 후 고형화(固形化)한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4. (생략)</p> <p>5. <u>“순천시미생물제제”</u>란 <u>액상 유용미생물, 고품미생물, BM활성수</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순천시 미생물센터”</u> 미생물제제를 연구·개발·배양·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u>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고품미생물 생산시설 및 그 부대시설</u>을 말한다.</p> <p>2. <u>유용미생물 생산시설</u>이란 ----- ----- ----- ----- <u>액상미생물</u> ----- -----</p> <p>3. ----- ----- ----- <u>유용미생물 생산시설</u> ----- ----- <u>액상미생물</u> ----- ----- -----.</p> <p>4. <u>“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u>이란 <u>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농업인 교육 등을 운영</u>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u>액상미생물</u>, ----- -----.</p>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치) <u>미생물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u></p> <p>1. <u>유용미생물배양실 :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농업기술센터 내)</u></p> <p>2. <u>고형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시설 :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538-4</u></p> <p>제4조(기능)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8조(공급가격) ① <u>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u></p> <p>② <u>대금의 납부는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3조(위치) <u>순천시 미생물센터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538-4에 둔다.</u></p> <p>제4조(기능)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 농업인 교육</u></p> <p>제8조(공급단가) ① ----- - <u>공급단가는 -----.</u></p> <p>② ----- ----- <u>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u></p> <p>제10조 (미생물 배달) <u>농업인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u></p> <p>1. <u>미생물 배달 신청은 배달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한다.</u></p> <p>2. <u>배달은 다음 각목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u></p> <p>가. <u>월요일은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주암면을 배달한다.</u></p> <p>나. <u>화요일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동지역을 배달한다.</u></p> <p>다. <u>수요일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배달한다.</u></p>

**현 행**

**개 정 안**

3. 배달일정은 미생물 생산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배달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미생물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제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6. 배달지역 도착 후 미생물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10조와 같음)

**[별표]**

**[별표]**

[별표]

**순천시미생물계제 공급 가격**

(제8조 관련)

구 분	액상미생물계		고형미생물계		BM활성수	
	단위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수수료
순천시민 및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 (단위(제6조제1항))	1ℓ	350원	1kg	500원	1ℓ	100원
순천시에 주소 및 영업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1ℓ	550원	1kg	1,000원	1ℓ	500원
순천시민 이외의 자 (제6조제2항)	1ℓ	1,100원	1kg	1,500원	1ℓ	1,000원

[별표]

**순천시미생물계제 공급단가**

(제8조 관련)

구 분	액상미생물		고형미생물	
	단위	금액	단위	금액
순천시민 및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 (단위(제6조제1항))	1ℓ	350원	1kg	500원
순천시에 주소 및 영업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1ℓ	550원	1kg	1,000원
순천시민 이외의 자 (제6조제2항)	1ℓ	1,100원	1kg	1,500원

## 현 행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서 (제6조 관련)

신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우 소 :			
3. 연락처 :			4. 사용분야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량					
유 용 미 생 물 제					BM활성수
군 종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 모	
신청량	ℓ	ℓ	ℓ	ℓ	
군 종	토양개량제	축산생균제	기타( )		
신청량	kg	kg			
<p>「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미생물제제를 신청하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순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신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우 소 :			
3. 연락처 :			4. 사용분야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량					
유 용 미 생 물 제					BM활성수
군 종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 모	
신청량	ℓ	ℓ	ℓ	ℓ	
군 종	토양개량제	축산생균제	기타( )		
신청량	kg	kg			
<p>「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 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순천시장 귀하					

## 개 정 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서 (제6조 관련)

■ 신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성별 : 남, 여			
3. 주소(거주지) :					
4. 연락처 :			5. 사용분야 :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내역					
광합성균 (5ℓ)	고초균 (5ℓ)	유산균 (5ℓ)	효모균 (5ℓ)	특허균 (5ℓ)	
포	포	포	포	포	포
BT제 (5ℓ)	토양개량제 (10kg)	생균제 (10kg)	기타( )	기타( )	
포	포	포	포	포	포
■ 대금수납방법		신용카드 ( ) 고 지 서 ( )			
■ 미생물 수령방법		직접수령 ( ) 배달신청 ( )			
		※ 배달처 :			
<p>「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미생물제제를 신청하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순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 신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성별 : 남, 여			
3. 주소(거주지) :					
4. 연락처 :			5. 사용분야 :		
■ 순천시미생물제제 신청내역					
광합성균 (5ℓ)	고초균 (5ℓ)	유산균 (5ℓ)	효모균 (5ℓ)	특허균 (5ℓ)	
포	포	포	포	포	포
BT제 (5ℓ)	토양개량제 (10kg)	생균제 (10kg)	기타( )	기타( )	
포	포	포	포	포	포
<p>「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순천시미생물제제 무상 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순천시장 귀하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제정이유

-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시민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및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가입대상(안 제3조)

-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함.

### ○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함.

### ○ 보험금 신청(안 제6조)

-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

### ○ 보험금액 산정(안 제7조)

-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

### ○ 보험금 지급제외(안 제9조)

-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19. 5. 10 ~ 5. 30.):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7.(여성가족과-982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5. 1.(안전총괄과-733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7.(기획예산실-56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25호)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장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장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장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130	-226	-226	-226	-226	-226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130	226	226	226	226	226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130	226	226	226	226	226
국 비	-	-	-	-	-	-
도 비	172	0	43	43	43	43
시 비	958	226	183	183	183	183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 등급별 기준 상향 조정

##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2조 제명 변경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 ‘평가결과 반영’
- 등급별 명칭과 점수 상향 조정 및 등급별 적용내용 자구 수정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현행 → 개정안	현행 → 개정안	현행 → 개정안
등급	우수 → 탁월	미흡 → 우수	부진 → 미흡
점수	60점 이상 → 95점 이상	60점 미만 → 95점 미만	50점 미만 → 85점 미만
적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구역 확대</li> <li>• 입찰참여 시 가점(3점)</li> <li>• 우대조치 대행비 1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여 시 가점(1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과징금 2천만원, 대행구역 축소</li> <li>• 2차 : 과징금 5천만원, 대행계약 해지</li> </ul>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3. ~ 5. 23.)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0.(여성가족과-1017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3.(순천시 공고 제2019-903호)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명을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에서 ‘평가결과 반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기 타
		계약기간 중	차기계약 시	
탁월	9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행구역 확대, 업체표창 또는 개인표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여 시 가점(3점)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5점 이상 우수업체 중 상위 1위 업체에 대하여 1,000만원 지급</li> <li>상위1위 업체의 과업에 적환장 운영 주관 업무를 포함하여 차기계약 추진</li> </ul>
우수	95점 미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여 시 가점(1점) 부여</li> </ul>	(삭제)
미흡	85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대행구역 축소</li> <li>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대행계약 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여 시 감점(3점) 부여</li> </ul>	

※ 대행구역 확대 또는 축소는 대행기간 중 신규 청소구역이 발생하거나 청소구역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 ③ (생략)					제22조(평가결과 반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등급	평가 점수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기 타	등급	평가 점수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기 타
		대행기간 중	입찰 또는 재계약 시				계약기간 중	차기계약 시	
우수	60점 이상	▪대행구역 확대, 업체포상 또는 개인포상	▪입찰참여 또는 적격심사 시 가점(3점) 부여	▪90점 이상 우수업체 중 상위 1위업체에 대하여 1,000만원 지급 ▪상위 1위 업체를 전환장 운영 주관사로 지정	탁월	95점 이상	▪대행구역 확대, 업체포상 또는 개인포상	▪입찰참여 시 가점(3점) 부여	▪95점 이상 우수업체 중 상위 1위업체에 대하여 1,000만원 지급 ▪상위1위 업체의 과업에 전환장 운영 주관 업무를 포함하여 차기계약 추진
미흡	60점 미만	▪대행구역 축소	▪입찰참여 또는 적격심사 시 감점(3점) 부여	▪대행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0만원 차감 지급	우수	95점 미만	(삭제)	▪입찰참여 시 가점(1점) 부여	(삭제)
부진	50점 미만	▪1차: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2차: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입찰참여 제한		미흡	85점 미만	▪1차: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대행구역 축소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대행계약 해지	▪입찰참여 시 감점(3점) 부여	
※ 대행구역 확대 또는 축소는 대행기간 중 신규 청소구역이 발생하거나 청소구역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반영					※ 대행구역 확대 또는 축소는 대행기간 중 신규 청소구역이 발생하거나 청소구역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반영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자원 선순환도시로 나아가고자 우리 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논의하기 위함
- 이를 위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1장(章) 6조항(條項) 신설
  -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안 제42조)
  - 민관협의회 구성 및 규모(안 제43조)
  -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및 해촉(안 제44조)
  - 민관협의회 주요 기능(안 제45조)
  - 민관협의회 회의 및 의결(안 제46조)
  - 민관협의회 회의 출석 수당 등(안 제 47조)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안 제51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6. 10. ~ 6. 20.)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6. 10.(여성가족과-123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6. 5.(기획예산실-694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6. 10.(순천시 공고 제2019-1126호)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42조부터 제46조를 각각 제48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로 하며, 제5장(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42조(설치)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3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2. 시민단체 소속 임원
3.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폐기물 분야의 전문가
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과 위촉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기획, 교육 및 홍보, 입지 등 3개의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분과별 위원장은 참여위원 중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기능) 협의회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도시 순천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소행정 분야 정책 발굴 및 제안·권고
2.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3. 청소행정 분야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제4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현행 제45조) 중 “사용료, 과태료 등에” 를 “사용료 등에” 로, “따른다” 를 “따르고,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장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u>
<신 설>	<u>제42조(설치)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신 설>	<p><u>제43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u></li> <li><u>2. 시민단체 소속 임원</u></li> <li><u>3.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u></li> <li><u>4. 폐기물 분야의 전문가</u></li> <li><u>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u></li> <li><u>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li> </ol> <p><u>② 위원장은 순천시장과 위촉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u></p> <p><u>③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u>④ 협의회는 기획, 교육 및 홍보, 입지 등 3개의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분과별 위원장은 참여위원 중 호선한다.</u></p>

현행	개정안
	<p>⑤ <u>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u></p>
<p>&lt;신설&gt;</p>	<p>제44조(임기 및 해촉) ①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u></li> <li>2. <u>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li> <li>3. <u>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li> </ol>
<p>&lt;신설&gt;</p>	<p>제45조(기능) <u>협의회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도시 순천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행정 분야 정책 발굴 및 제안·권고</u></li> <li>2. <u>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u></li> <li>3. <u>청소행정 분야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u></li> </ol>
<p>&lt;신설&gt;</p>	<p>제46조(회의) ① <u>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u>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lt;신설&gt;</p>	<p>제47조(수당 등)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장 보칙</p>	<p>제6장 보칙</p>

현행	개정안
<p><u>제42조 ~ 제44조</u> (생략)</p> <p><u>제45조</u>(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u>사용료, 과태료</u>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u>따른다</u>.</p> <p><u>제46조</u> (생략)</p>	<p><u>제48조 ~ 제50조</u>(현행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p> <p><u>제51조</u>(준용규정) -----  ----- <u>사용료</u> 등에 -----  ----- <u>따르고</u>,  <u>과태료</u>에 관한 사항은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에 따른다.</p> <p><u>제52조</u> (현행 제46조와 같음)</p>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민 참여 조례 제4조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
  - 시민 참여 보장 및 참여한 시민 대상 위원회 수당 및 실비 보상

## 2. 비용추계의 전제

- 우리 시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함.
- 생활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및 재활용-업사이클까지의 쏘단계에 걸쳐 시민과 함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고자 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14,900	-12,900	-25,500	-25,500	-25,500	-25,500
세입(a)						
세출(b)	114,900	12,900	25,500	25,500	25,500	25,500

## 4. 자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14,900	12,900	25,500	25,500	25,500	25,500
국 비						
도 비						
시 비	114,900	12,900	25,500	25,500	25,500	25,5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5,500천원/년
- 산출기초

- 위원회 수당(정책 제안 등) : 12,000천원(30명\*100천원\*4회)
- 교육 및 단순 워크숍 참여 : 9,900천원(30명\*11천원\*30회)
- 정책 현장 벤치마킹 등 : 3,600천원(30명\*40천원\*3회)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8. 작성자(참여자)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유 형 익 (☎ 749-6207)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 박 상 훈 (☎ 749-6401)

#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제정이유

- 나무심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무심기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무심기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 시민운동본부 구성 운영(안 제6조~안 제12조)
  - 50명 내외, 임기 2년, 참석 수당 지급, 필요경비 지원
  - 반려나무 갖기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교육, 홍보
  -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현수 현금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 자문관 운영(안 제13조~안 제14조)
  - 민간전문가를 녹지조성 자문관으로 위촉, 임기 2년, 수당 지급
  - 녹지의 조성 관리 기본 디자인 및 계획수립 자문
- 나무심기 지원 및 시민 참여(안 제15조~안 제16조)
  -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현수 전개
  - 공공부지, 골목, 마을가꾸기 등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 시민, 단체에서 기념식수 시 식수장소 제공
- 포상 및 조경상 시상(안 제17조)
  - 나무심기 우수 읍면동, 단체 포상
  - 우수 조경 및 조경시설물 대상으로 조경상 시상
- 사후관리(안 제18조~안 제19조)
  - 정보망 구축,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구성 운영, 필요 경비 지원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5. ~ 2019. 6.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4.(여성가족과-103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5. 9.(공원녹지과-558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4.(기획예산실-600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5.(순천시 공고 제2019-976호)

#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공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순천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나무”란 생활 속 생태문화를 실천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나무심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나무심기 및 녹지조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민운동본부의 구성) ① 나무심기와 녹지조성 운동을 총괄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순천시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

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운동본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시민운동본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조경·화훼·환경·경관·도시계획·디자인·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제7조(시민운동본부 위원의 임기)** ① 시민운동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민운동본부의 기능)**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시민 반려나무 갖기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2. 나무심기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발굴 보급
3.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4. 녹지조성 보전 관리 활동
5. 나무심기에 필요한 현수, 현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무심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민운동본부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민운동본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시민운동본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운동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운동본부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민운동본부에서 정한다.

**제11조(시민운동본부 지원)** ① 시민운동본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본부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운동본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녹지조성 등 자문관 운영)**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녹지조성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 가로수길, 도시숲 등 녹지의 조성·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3.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사업 내의 녹지조성 등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녹지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관은 순천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순천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자문관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나무심기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홍보활동
  2.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4. 공공부지, 골목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5. 식재수목의 보호·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와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최근 2년내 순천시에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조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경상 시상에 따른 심사 등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나무심기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

## 1. 재정수반요인

### ○ 안 제11조(시민운동본부 지원)

- ① 시민운동본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민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안 제13조(녹지조성 등 자문관 운영)

- ⑦ 시장은 자문관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안 제15조(나무심기 지원)

-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 ○ 안 제17조(포상 및 인센티브)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 안 제20조(사후관리)

-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민운동본부 운영과 활동 경비, 위원 수당 등 지원
- 녹지조성 등 자문관 운영 수당 지급
-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 지원
- 나무심기, 녹지 조성 활동 우수 읍면동 민간단체 포상, 조경상 시상
- 사후관리 필요 경비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766,5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세입(a)	0					
세출(b)	1,766,5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766,5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766,5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353,3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5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 산 출 액(2019년) : 353,300천원
- 산출근거(2019년)
  - 시민운동본부 지원(48명) : 39,800,000원×1식 = 39,800천원
    - 참석수당 : 100,000원×48명×6회 = 28,800,000원
    - 교육 및 워크숍추진 : 3,000,000원×2회 = 6,000,000원
    - 홍보 및 운동추진 물품 등 구입 : 500,000원×10회=5,000,000원



#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7. 4.

## 1. 개정이유

-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의 당연직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수를 늘려 정원 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구성(제14조제3항제1호)
  -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개정
    - 기존(5명) :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 개정(2명) : 부시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순천시 여성가족과 :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
  - 정원산업과 검토결과 : 수용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30. ~ 5.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30.(여성가족과-92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15.(기획예산실-470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30.(순천시 공고 제2019-834호)

#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4항(중전의 제14조제3항) 각호 외 본문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삭제하고, 마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구성) ① ~ ② (생략)                      &lt;신 설&gt;</p> <p>③ 위원은 <u>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당연직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부시장</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일자리경제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보건소장</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농업기술센터소장</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순천만관리센터소장</u></p> <p>2. 위촉직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제1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u>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현행 마목과 같음)</u></p> <p>2. 위촉직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